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d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6년 4월 27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5월 27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 6276. 7000 www.hdfund.co.kr) 및 각 판매회사 영업점

9.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투자대상, 투자제한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이익 배분, 과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 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 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26. 4. 27)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펀드코드 : A1366)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높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 특히 저가주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저가주 등에의 투자로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 위험, 유동성 제약 발생의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으로 중소형 주식 중 시장가격이 이만오천원 미만인 "저가주(Low Priced Stock)"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량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시장 대비 장기적인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형 모 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입니다.

※ 저가주(Low Priced Stock)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이만오천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절대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향후 국내주식시장 수준 및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동 투자신탁의 중소형주는 시가총액 상위 100 위 미만 종목으로 합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 국내 중소형 주식 중 절대가격 기준 25,000 원 미만이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 유니버스를 구성한 뒤 재무요소에 기초한 정량적 모형에 정성적 분석을 감안하여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뒤 시장 상황에 맞는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함으로써 시장대비 장기적인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형 모 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중소형 종목 중 절대가격 기준 25,000 원 미만인 종목 내에서,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 신용분석 등을 고려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투자 유니버스 구성하여, 운용여건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시장 대비 장기적인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중소형 종목 저가주(Low Price Stock)에는 통상 70% 이상으로 구성하며, 잔여 비중은 시장환경, 성장성, 모멘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종목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KOSPI 중형주 60% + KOSPI 소형주 20% + KOSDAQ100 15% + CALL 5%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납입금액의 1.000% 이내	1.600%	0.850%	1.490%	1.606%	262	431	605	971	1,99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	2.250%	1.500%	1.650%	2.250%	231	467	711	1,217	2,607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00% 이내	1.175%	0.425%	1.110%	1.184%	171	296	426	701	1,48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1.550%	0.800%	1.190%	1.557%	160	325	495	854	1,864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1형과 종류 C1형,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C1은 CDSC(보수체감형) 종류로써, 종류 C2(가입 2년차) 판매보수 연 1.25%, 총보수 연 2.0%, 종류 C3(가입 3년차) 판매보수 연 0.99%, 총보수 연 1.74%, 종류 C4(가입 4년차) 판매보수 연 0.9%, 총보수 연 1.65% 입니다.

(주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9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2026년 3월 31일)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25.04.28 ~26.04.27	24.04.28 ~26.04.27	23.04.28 ~26.04.27	21.04.28 ~26.04.27	11.04.04 ~26.04.27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2011-04-04	121.59	55.66	39.04	20.66	11.63
비교지수(%)	2011-04-04	65.49	25.80	18.49	7.07	5.17
수익률 변동성(%)	2011-04-04	24.14	22.27	20.79	20.10	21.54

(주1) 2013년 4월 15일 이전 비교지수 : KOSPI 95% + CALL 5%

2013년 4월 15일 이후 비교지수 : KOSPI중형주 60% + KOSPI 소형주 20% + KOSDAQ100 15% + CALL 5%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운용 경력 년수(년)
			집합투자 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백두진	1984	책임(차장)	-	-	-	-	16.05	17.93	12.6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운용전문인력 및 당사 동종집합투자기구의 운용기간이 1년 또는 2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기준일 : 2024년 11월 5일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가하락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고 편입상품으로 주가하락(전체 주식시장의 변동 또는 개별기업의 실적 변화 등으로 인한 개별기업의 주가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합니다. 주식가격은 외부환경의 변동 등 시장전체위험의 증가 및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 개별위험의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변동 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함으로써 채무증권 등의 이자율변동에 의한 가격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특정주식 집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저가주(Low Price Stock)에 투자함으로써 상장 주식 전체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일반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개별 발행회사의 신용상태 또는 가격변동 등이 더 높은 종목에 투자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운용 성과는 일반 주식형의 성과대비 더 높은 변동성을 부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와 크고 작은 괴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
유동성제약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저가주(Low Price Stock)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높고 유동성이 적은 종목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 종목의 신용사건의 발생 등으로 유동성이 제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table>
<tr><td>매입방법</td><td>• 15 시 30 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5 시 30 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td><td>환매방법</td><td>• 15 시 30 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 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3 영업일(D+2)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 영업일(D+3) 환매대금을 지급</td></tr>
<tr><td>환매 수수료</td><td colspan="3">없음</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3"><table><tr><td>산정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hdfund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table></td></tr>
<tr><td>과세</td><td colspan="3"><table><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 내용</th></tr><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u>입니다.</td></tr><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u>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u>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td></tr></table></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3">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 C1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다음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시 적용되는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른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table><tr><td>C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
최초가입</td><td>C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
종류 C1보유기간
1년 경과</td><td>C3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
종류 C2보유기간
1년 경과</td><td>C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종류C3 보유기간
1년 경과</td></tr></table></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대표번호: 02-6276-70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hdfund.co.kr)</td></tr>
<tr><td>모집기간</td><td>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 매출총액</td><td>10조좌(최초설정시 1좌당 1원)</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6 년 5 월 27 일</td><td>존속기간</td><td>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www.hdfund.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4. 집합투자업자(13 페이지) 및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51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3">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table><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tr><td>판매수수료</td><td>수수료 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이전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table></td></tr>
</table>

		수수료 후취	일정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이전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랩(W)	판매회사에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특정금전신탁에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기관투자자, 펀드 또는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P1)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연금펀드 (F2)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dfund.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dfund.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dfund.co.kr.co.kr)

QR 코드를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A1366)								
(종류) 클래스	A1	C1	C2	C3	C4	C-W	C-e	AG	P1-e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1367	A1368	A1369	A1370	A1371	A1372	A1373	BP370	BT598
(종류) 클래스	C-F	S	A-e	C-P1	C-P2	S-P	C-F2	CG	P2-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수수료선취 -온라인)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연금펀드)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L766	AP078	AQ824	B2341	B2343	B5518	B6399	BP371	BT59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 · 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 ·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해당사항 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 좌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금액이 예정좌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때까지 판매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이 확정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상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의 영업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dfund.c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A1366)								
(종류)클래스	A1	C1	C2	C3	C4	C-W	C-e	AG	P1-e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1367	A1368	A1369	A1370	A1371	A1372	A1373	BP370	BT598
(종류)클래스	C-F	S	A-e	C-P1	C-P2	S-P	C-F2	CG	P2-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수수료선취-온라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연금펀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L766	AP078	AQ824	B2341	B2343	B5518	B6399	BP371	BT59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주요내용
2011년 04월 04일	최초설정
2012년 02월 14일	투자설명서 변경(운용전문인력 변경 등)
2012년 04월 19일	투자설명서 변경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등)
2013년 04월 15일	투자설명서 변경 (운용전략 및 운용전문인력 변경 등)
2013년 10월 01일	투자설명서 변경 (신규 클래스 신설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14년 02월 05일	운용전문인력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14년 02월 28일	모자형 전환 및 종류 S 신설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14년 04월 11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추가 및 종류 A-e 신설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14년 04월 25일	투자설명서 변경(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등)
2014년 10월 30일	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15년 01월 16일	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채권평가회사 추가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15년 02월 06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추가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15년 04월 23일	종류 추가 및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15년 05월 26일	종류 C-P2 환매수수료 관련 내용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15년 07월 14일	종류 S-P 신설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15년 08월 07일	종류 C-F2 신설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16년 05월 12일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16년 07월 02일	투자위험등급 분류 체계 개편에 따른 기재정정
2016년 07월 30일	증권시장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기재정정
2017년 01월 13일	운용인력 변경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에 따른 기재정정
2017년 04월 20일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17년 04월 29일	종류 AG, CG 신설에 따른 기재정정

2017년 07월 13일	운용인력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17년 08월 03일	종류 P1-e, P2-e 신설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18년 01월 05일	환매수수료 폐지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18년 05월 23일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19년 03월 15일	운용전문인력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19년 04월 18일	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19년 06월 26일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19년 09월 16일	기업공시서식 개정 및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기재정정
2019년 11월 29일	운용역 변경 및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20년 08월 06일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21년 04월 15일	투자위험등급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21년 06월 24일	최근 결산기 재무정보 확정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에 따른 기재정정
2022년 04월 15일	투자위험등급 및 운용역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2022년 05월 31일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23년 05월 10일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소득세법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23년 09월 12일	투자신탁명 변경 및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24년 06월 11일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기재정정, 소득세법 개정,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기재정정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 변경 등
2024년 11월 21일	운용인력 변경,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종류 S 등 정의 변경), 투자위험등급 변경내역 추가 및 외국원천징수세액 환급 내용 삭제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25년 04월 17일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26년 05월 27일	최근 결산기 재무정보 확정, 집합투자업자· 채권평가회사 관련 사항 기재정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추가형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1)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2)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음을 안내한 후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16 신영증권빌딩 02) 6276-70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2024. 11. 5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운용	주요이력

					(국내주식형)(%)				경력 년수 (년)	
			집합투자 기구 수(개)	운용 규모(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백두진	1984	책임 (차장)	-	-	-	-	16.05	17.93	12.6	2023.02~현재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 주식운용본부 2021~2022 포레스트투자일임 2018~2021 BNK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2017~2018 HDC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당사의 펀드운용은 본부 및 팀별로 운용하고 있고,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이 자투자신탁의 운용 전문인력을 병행합니다.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운용전문인력 및 당사 동종집합투자기구의 운용기간이 1년 또는 2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역		운용기간
책임운용역	부책임운용역	
김진성	-	2019.11.29 ~ 2022.04.14
이승구	-	2022.04.15 ~ 2024.11.20
백두진	-	2024.11.21 ~ 현재

주) 2024 년 11 월 기준 최근 3 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이전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일정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이전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랩(W)	판매회사에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특정금전신탁에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기관투자자, 펀드 또는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P1)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연금펀드 (F2)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 모자형 구조 :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칭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 투자대상] 국내주식에 60% 이상, 채권 등에 40% 이하 투자 [주요 투자목적] 중소형 주식 중 시장가격이 이만오천원 미만인 "저가주(Low Priced Stock)"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량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시장 대비 장기적인 초과수익을 추구 [주요 투자전략] - 국내 중소형 주식 중 절대가격 기준 25,000원 미만이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 유니버스를 구성한 뒤 재무요소에 기초한 정량적 모형에 정성적 분석을 감안하여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뒤 시장 상황에 맞는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 - 중소형 주식 중 저가주(Low Price Stock)에는 전체 주식편입비율의 70% 이상 투자하고, 시장환경, 성장모멘텀 등을 고려하여 매니저의 재량에 의해 저가주(Low Price Stock) 이외의 종목에도 투자할 예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 국내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중소형 주식 중 시장가격이 이만오천원 미만인 "저가주(Low Priced Stock)"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량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시장 대비 장기적인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입니다.

※ 저가주(Low Priced Stock)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이만오천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절대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향후 국내주식시장 수준 및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동 투자신탁의 중소형주는 시가총액 상위 100위 미만 종목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①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90%이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입니다.
②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10%이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 금융기관간 단기 자금거래)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

			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투자한도의 예외]

상기 ① 내지 ②의 투자한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①	주식	60%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②	채권	40%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③	자산 유동화 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⑤	집합 투자 증권	5%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30%이하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⑥	주식및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 일 것**
⑦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
⑧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
⑨	증권의 차입		규약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⑩	신탁업자고유 재산과의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 금융기관간 단기 자금거래)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투자한도의 예외]

상기 ① 내지 ④의 투자한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② 및 ④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1)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3)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의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제한

구분	주요내용	적용예외
①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이 경우 이해관계인 중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구분	주요내용	적용예외
①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이 경우 이해관계인 중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신	

	탁재산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동일종목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 자산총액의 30%까지: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상단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③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파생상품매매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부터1개월간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집합투자증권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	

	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77조 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⑥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⑦후순위 채권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기 투자대상의 ⑤ 내지 ⑨ 및 투자제한의 ② 내지 ④까지의 투자제한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중소형 주식 중 시장가격 이만 오천원 미만인 종목 중, 높은 내재가치 및 성장가능성을 지닌 우량 저가주(Low Price Stock)에 주로 투자하여,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90% 이상을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90%이상 투자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 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 중형주 60% + KOSPI 소형주 20% + KOSDAQ100 15% + CALL 5%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90%이상 투자하는 상품으로 편입투자신탁의 개별적 위험관리를 통해 투자위험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 대상인 국내주식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모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에 관한 사항]

※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전략

가. 투자전략

1) 기본투자전략

국내 중소형 주식 중 절대가격 기준 25,000 원 미만이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 유니버스를 구성한 뒤 재무요소에 기초한 정량적 모형에 정성적 분석을 감안하여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뒤 시장 상황에 맞는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중소형 주식 중 저가주(Low Price Stock)에는 전체 주식편입비율의 70% 이상 투자하고, 시장환경, 성장모멘텀 등을 고려하여 매니저의 재량에 의해 저가주(Low Price Stock) 이외의 종목에도 투자할 예정입니다.

2) 세부투자전략

가) 모델 포트폴리오 구성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중소형 종목 중 절대가격 기준 25,000 원 미만인 종목 내에서,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 신용분석 등을 고려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투자 유니버스 구성
- 투자 유니버스 종목을 복수의 스타일(하이베타, 턴어라운드, 저 PBR, 저 PER 등)로 분류한 뒤 시장비중,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국면 별로 가장 적합한 스타일로 조합하여 모델 포트폴리오 구성

나) 최종 포트폴리오 구성

- 모델 포트폴리오 종목 중, 종소형 종목 저가주(Low Price Stock)에는 통상 70%이상으로 구성하며 잔여 비중은 시장환경, 성장성, 모멘텀 등을 고려한 매니저 재량에 의하여 선정된 종목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로 상장되는 공모 예상가격이 저가주(Low Price Stock)에 포함되는 종목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전략

- 운용여건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 투자 유니버스 이외의 종목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모델 포트폴리오 또는 저가주(Low Price Stock)의 투자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에서 주로 투자하는 저가주(Low Price Stock)이의 기준이 되는 이만오천원의 시장가격은 향후 전체적인 주가수준,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투자신탁이 최초 설정된 이후 최초 매입 시에는 저가주(Low Price Stock)이었으나 이후 주가 상승에 따라 저가주(Low Price Stock)의 기준보다 가격이 높아진 경우에도 최초로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저가주(Low Price Stock)로 간주하여 추가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KOSPI 중형주 60% + KOSPI 소형주 20% + KOSDAQ100 15% + CALL 5%

주)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저가주(Low Price Stock)에 대한 적절한 비교지수가 없고, 또한 이 투자신탁은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서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협회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주로 저가주(Low Price Stock)에 투자함에 따라 신용위험이 높은 종목 또는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종목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위험관리를 위하여 신용위험 등 위험요인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며, 40~50종목에 분산하여 투자하여 유동성 위험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다. 수익구조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 또는 하락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사용하는 투자전략의 특성으로 인해 실제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비교지수의 성과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주요내용
주가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고 편입상품으로 주가하락(전체 주식시장의 변동 또는 개별기업의 실적변화 등으로 인한 개별기업의 주가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합니다. 주식가격은 외부환경의 변동 등 시장전체위험의 증가 및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 개별위험의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변동 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함으로써 채무증권 등의 이자율변동에 의한 가격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 어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 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입니다.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증권대여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증권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 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증권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자산을 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입거래에 따른 담보 제공 및 차입거래 수수료로 인하여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

	능성이 있으며, 차입한 주식에 대해 대여기간 중 대여자의 환수요청이 발생할 경우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차입이 여의치 못할 경우 차입매도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매도 주식 반환을 위한 주식 매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주요내용
특정주식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저가주(Low Price Stock)에 투자함으로써 상장 주식 전체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일반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개별 발행회사의 신용상태 또는 가격변동 등이 더 높은 종목에 투자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운용 성과는 일반 주식형의 성과대비 더 높은 변동성을 부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와 크고 작은 괴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
유동성 제약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저가주(Low Price Stock)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높고 유동성이 적은 종목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 종목의 신용사건의 발생 등으로 유동성이 제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투자위험

구분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부진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각종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 환매'의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거래 위험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투자신탁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 등급	(2) 등급	높은위험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이 **49.20%**이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높은위험**인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투자하며, 모투자신탁은 특히 저가주(Low Price Stock)에 집중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시장대비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상기의 운용전략 및 수익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식가격의 변동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수익률 변동성 기준_97.5% VaR(Value at Risk))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위험수준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주1)상기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수익률 변동성 기준"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한 97.5% VaR 모형"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3) 레버리지·인버스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는 VaR로 산출한 위험등급에서 1등급 상향합니다.

주4) 과거 수익률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5)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외화표시 파생결합증권,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 해외채권 등)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1등급 상향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통화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할 수 있고, 환율위험에 대한 헤지가 이루어져 환율의 변동성이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환율위험이 위험등급에 이미 반영된 경우 등 등급 상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6)「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상기 위험등급 산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2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투자위험등급 변경내역

변경일	변경전 위험등급	변경후 위험등급
2011.04.04 (최초 설정일)	-	1등급
2016.07.02	1등급	2등급
2021.04.15	2등급	1등급
2022.04.15	1등급	2등급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3)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4)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 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차이 및 가입자격
A1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됨
C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음
C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종류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C3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종류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C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종류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판매회사에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특정금전신탁,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없음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판매수수료가 없고, 판매보수가 C1에 비해 낮음 / 온라인 가입자 전용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수익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ㄱ)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ㄴ)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

		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ㄷ)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판매수수료가 징구됨 / 온라인 가입자 전용
C-P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P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함
C-F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연금펀드)	수익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ㄱ)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함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가 없고,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함
P1-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온라인 가입자 전용
P2-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 온라인 가입자 전용

5)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 등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전 등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1)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영업일(D+1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 (D+2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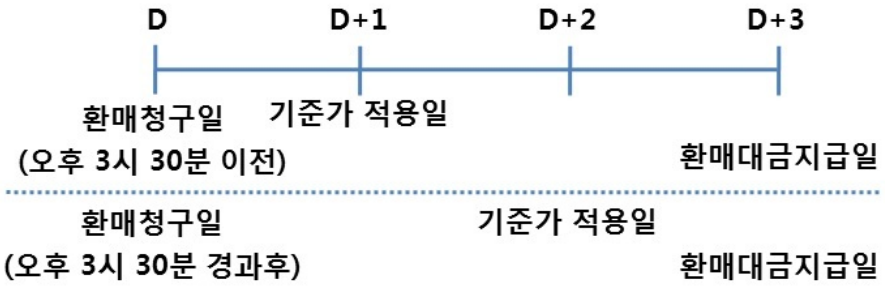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 합니다. 다만,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9)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집합투자기구재산으로 소유중인 금전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10)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불가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O

다. 전환

1)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 C1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다음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시 적용되는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른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C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	C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	C3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	C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최초가입		종류 C1보유기간 1년 경과		종류 C2보유기간 1년 경과		종류C3 보유기간 1년 경과

2) 전환하는 경우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 처리하되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3)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전환하고자 하는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해당 전환일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4) 환매를 청구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전환을 하지 아니합니다.

5)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2.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 좌 단위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합니다. (단 국경일 등 공휴일 제외)

공시방법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dfund.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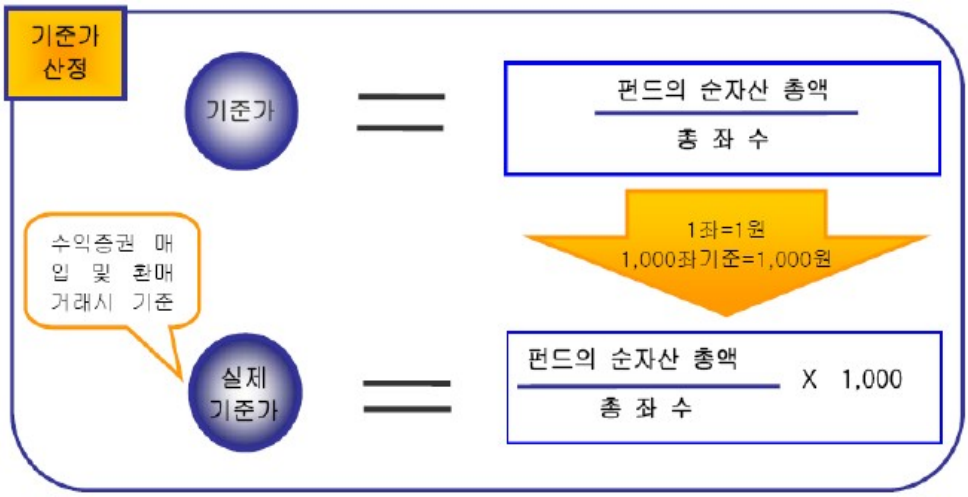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구 분	내 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 채무증권	비상장채무증권(위의 상장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어음 등 및 양도성예금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류별로 수익증권이 발행되며, 종류별 보수 및 수수료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 급 비 율									지급시기
	A1	C1	C2	C3	C4	C-W	C-e	C-F	S	
	(수수료선취	(수수료미징구	(수수료미징구	(수수료미징구	(수수료미징구	(수수료미징구	(수수료미징구	(수수료미징구	(수수료후취	

	-오프라인)	-오프라인 -보수체감)	-오프라인 -보수체감)	-오프라인 -보수체감)	-오프라인 -보수체감)	-오프라인 -랩)	-온라인)	-오프라인 -기관)	-온라인슈퍼)	
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1.000% 이내	-	-	-	-	-	-	-	3 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0% 이내	A1 · A-e · AG : 매입 시 S : 환매 시
환매 수수료	없음									환매 시

구분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C-P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C-P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C-F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연금펀드)	P1-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P2-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지급 시기
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0.500% 이내		-	-	-	-	-	-	-	A1 · A-e · AG : 매입 시 S : 환매 시
환매 수수료	없음									환매 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 시점에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 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환매 시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주2) 선취판매수수료는 투자자가 최초 매입하는 종류 A1, A-e, AG 수익증권에 한하여 부과되며 종류 A1은 납입금액의 1.000%이내, 종류 A-e 및 AG는 납입금액의 0.500%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3) 후취판매수수료는 투자자가 환매하는 종류 S 수익증권에 한하여 부과되며 3년 미만 환매시 납입금액의 0.150%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4)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오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 시기
	A1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C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C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C3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C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업자보수	0.700	0.700	0.700	0.700	0.700	0.700	0.700	0.700	0.700	매3 월 후 급
판매회사보수	0.850	1.500	1.250	0.990	0.900	0.000	0.800	0.030	0.320	
수탁회사보수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총보수	1.600	2.250	2.000	1.740	1.650	0.750	1.550	0.780	1.070	-
기타비용	0.001	-	-	-	0.001	0.001	0.001	-	0.001	발생시
총보수·비용	1.601	2.250	2.000	1.740	1.651	0.751	1.551	0.780	1.071	-
(동종유형총보수)	1.490	1.650	-	-	-	-	1.190	-	-	-
합성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포함)	1.606	2.250	2.000	1.740	1.657	0.756	1.557	0.780	1.077	--

구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A-e (수수료선취-온라인)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P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C-F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연금펀드)	P1-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집합투자업자보수	0.700	0.700	0.700	0.700	0.700	0.700	0.700	0.700	0.700	매3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425	0.459	0.810	0.790	0.740	0.240	0.030	0.395	0.370	
수탁회사보수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총보수	1.175	1.209	1.560	1.540	1.490	0.990	0.780	1.145	1.120	-
기타비용	0.003	-	-	0.001	-	-	-	-	0.001	발생시
총보수·비용	1.178	1.209	1.560	1.541	1.490	0.990	0.780	1.145	1.121	-
(동종유형총보수)	1.110	-	-	-	-	-	-	-	-	-
합성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포함)	1.184	1.209	1.560	1.547	1.495	0.996	0.780	1.149	1.126	-
증권거래비용	0.696	-	-	0.711	0.770	0.699	-	0.743	0.700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연도 : 2025.04.04-2026.04.03] 기타비용은 예탁원결제보수, 채권평가보수, 부동산감정평가보수,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보관대리인 보수, 해외거래예탁비용, 법률자문비용 등이 있으며,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 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 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직전회계연도 : 2025.04.04-2026.04.03] 증권거래비용은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ELW/ELS 거래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 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이 있으며,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212,719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 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이 투자신탁의 모 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비용을 제외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은 이 자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2026년 3월 31일)

주7) 종류 A1형과 종류 C1형,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8) 금융비용은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비용 등이 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간 중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직전 회계연도의 발생 비용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1,000만원을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 천원]>

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A1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262	430	604	969	1,994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262	431	605	971	1,999
C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231	467	711	1,217	2,607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231	467	711	1,217	2,607
C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205	416	633	1,087	2,345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205	416	633	1,087	2,345
C3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78	362	552	920	2,065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178	362	552	920	2,065
C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69	344	525	904	1,968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170	345	527	907	1,974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7	157	241	419	934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77	158	242	422	940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59	323	493	851	1,857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160	325	495	854	1,864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80	163	250	435	969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80	163	250	435	969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10	224	342	593	1,312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110	225	344	597	1,319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70	295	424	698	1,479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171	296	426	701	1,485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73	301	434	715	1,514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173	301	434	715	1,514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60	325	496	856	1,867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160	325	496	856	1,867
C-P1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58	321	490	846	1,846

	-오프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159	323	492	849	1,853
C-P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53	311	474	819	1,789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153	312	476	821	1,795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01	207	317	549	1,217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102	208	319	553	1,225
C-F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연금펀드)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80	163	250	435	969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80	163	250	435	969
P1-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17	239	366	633	1,398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118	240	367	636	1,402
P2-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15	234	358	620	1,370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115	235	360	623	1,376

주1) 종류A1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000%, 종류A-e 및 AG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500%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판매사별 판매수수료가 차등화되면 예상되는 총보수·비용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 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S 수익증권의 경우 보유기간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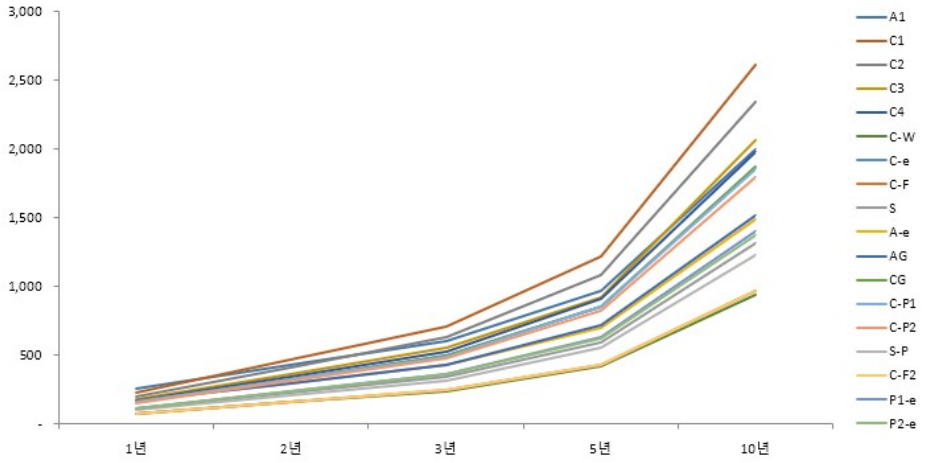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 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 계약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

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 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가입자격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함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금액 한도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전환금액주1)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 추가 세액공제(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주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제외)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외 수령시 (부득이한 경우)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연금계좌 가입자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66 조제 1 항제 2 호의 재난으로 15 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연금외 수령시 과세(부득이한 경우)	연금소득세 5.5~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주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 세액공제 합니다.[주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주1)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주2)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나)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s://100lifeplan.fss.or.kr/main/main.do)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5 기(2025.04.04 - 2026.04.03)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4기(2024.04.04 - 2025.04.03)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3기(2023.04.04 - 2024.04.03)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15 기 (2026.04.03)	제 14기 (2025.04.03)	제 13기 (2024.04.03)
운용자산	28,456,734,795	21,720,830,785	25,671,740,469
증권	28,456,734,795	21,720,830,785	25,671,740,469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0	0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803,170	3,331,778	86,567,122
자산총계	28,458,537,965	21,724,162,563	25,758,307,591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803,170	3,331,778	86,567,122
부채총계	1,803,170	3,331,778	86,567,122
원본	14,538,044,756	20,661,310,427	23,783,292,115
수익조정금	-6,054,143,058	-186,837,122	-478,740,330
이익잉여금	19,972,833,097	1,246,357,480	2,367,188,684
자본총계	28,456,734,795	21,720,830,785	25,671,740,469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5 기 (2025.04.04 - 2026.04.03)	제 14기 (2024.04.04 - 2025.04.03)	제 13기 (2023.04.04 - 2024.04.03)
운용수익	19,972,833,097	1,246,357,480	3,413,957,184
이자수익	0	0	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9,972,833,097	1,246,357,480	3,413,957,184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	19,972,833,097	1,246,357,480	3,413,957,184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재무정보상의 재무상태표"와 "감사(BSPL)상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5)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15기 0원 발생, 14기 0원 발생, 13기 0원 발생)

주6)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15기 0원 발생, 14기 0원 발생, 13기 0원 발생)

[단위:백만원,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구분	당기(2025.04.04 - 2026.04.03)			전기(2024.04.04 - 2025.04.03)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	-	-	-	-	-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	-	-	-	-	-
부동산	-	-	-	-	-	-
장내파생상품	-	-	-	-	-	-
장외파생상품	-	-	-	-	-	-
기타(REPO,대차,콜 등)	-	-	-	-	-	-
합계	-	-	-	-	-	-

주)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단위: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	-	-	-	-	-	32.20

주1) 동종유형이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합니다.

주2) 동종유형 평균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ETF를 제외한 공모증권펀드의 주식 평균매매회전율

을 의미하며,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 제 9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분기영업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분기별 누적 평균매매회전율 공시하고 있습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 목	제 15 기(2026.04.03)		제14기(2025.04.03)		제13기(2024.04.03)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 및 예치금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28,456,734,795		21,720,830,785		25,671,740,469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28,456,734,795		21,720,830,785		25,671,740,469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1,803,170		3,331,778		86,567,122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1,803,170		3,331,778		86,567,122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28,458,537,965		21,724,162,563		25,758,307,591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1,803,170		3,331,778		86,567,122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1,803,170		3,331,778		86,567,122	
4. 수수료미지급금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1,803,170		3,331,778		86,567,122
자 본						
1. 원 본	14,538,044,756		20,661,310,427		23,783,292,115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						

금						
3. 이월잉여금	13,918,690,039		1,059,520,358		1,888,448,354	
(발행좌수 당기: 14,538,044,756 좌	이익잉여금	19,972,833,097		1,246,357,480		2,367,188,684
전기: 20,661,310,427 좌	수익조정금	-6,054,143,058		-186,837,122		-478,740,330
전전기: 23,783,292,115 좌)						
(기준가격 당기: 1,000.00 원						
전기 1,000.00 원						
전전기: 1,000.00 원)						
자 본 총 계		28,456,734,795		21,720,830,785		25,671,740,469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8,458,537,965		21,724,162,563		25,758,307,591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제 15 기 (2025.04.04-2026.04.03)		제14기 (2024.04.04-2025.04.03)		제13기 (2023.04.04-2024.04.03)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 이 자 수 익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4,336,785,956		2,382,734,542		3,422,422,151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24,336,785,956		2,382,734,542		3,422,422,151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4,363,952,859		1,136,377,062		8,464,967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4,363,952,859		1,136,377,062		8,464,967	
운 용 비 용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9,972,833,097		1,246,357,480		3,413,957,184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1.373832137		0.060323254		0.143544349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04 - 2026.04.03	207	207	162	257	223	379	145	285
2024.04.04 - 2025.04.03	238	238	41	42	72	75	207	217
2023.04.04 - 2024.04.03	299	286	19	20	81	83	238	257

주1) 2025.04.04 - 2026.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3,541,273,695좌 / 13,541,273,695원

주2) 2024.04.04 - 2025.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713,640,399좌 / 713,640,399원

주3) 2023.04.04 - 2024.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49,026,011좌 / 549,026,011원

가. 종류형 펀드

-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P1-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04 - 2026.04.03	3	3	4	7	3	4	3	7
2024.04.04 - 2025.04.03	1	1	2	3	0	0	3	3
2023.04.04 - 2024.04.03	1	1	1	1	1	1	1	1

주1) 2025.04.04 - 2026.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27,445,532좌 / 327,425,882원

주2) 2024.04.04 - 2025.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1,280,259좌 / 11,280,259원

주3) 2023.04.04 - 2024.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897,810좌 / 4,897,810원

-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P2-e(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04 - 2026.04.03	2	2	3	4	3	5	1	3
2024.04.04 - 2025.04.03	1	1	2	2	1	1	2	2
2023.04.04 - 2024.04.03	0	0	6	6	5	4	1	2

주1) 2025.04.04 - 2026.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29,796,879좌 / 129,789,089원

주2) 2024.04.04 - 2025.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8,665,654좌 / 8,665,654원

주3) 2023.04.04 - 2024.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8,142,095좌 / 8,142,095원

-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04 - 2026.04.03	1	1	0	1	1	1	1	1
2024.04.04 - 2025.04.03	1	1	0	0	0	0	1	1
2023.04.04 - 2024.04.03	1	1	0	0	1	0	1	1

주1) 2025.04.04 - 2026.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1,200,430좌 / 51,197,869원

-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04 - 2026.04.03	0	0	1	2	0	0	2	3
2024.04.04 - 2025.04.03	0	0	0	0	0	0	0	0
2023.04.04 - 2024.04.03	1	1	0	0	0	0	0	0

주1) 2025.04.04 - 2026.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16,888,637좌 / 116,879,285원

-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C-P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5.04.04 - 2026.04.03	8	7	1	2	1	1	8	14
2024.04.04 - 2025.04.03	9	8	0	0	1	1	8	7
2023.04.04 - 2024.04.03	11	9	0	0	2	2	9	8

주1) 2025.04.04 - 2026.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627,957,038좌 / 627,906,797원

-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A-e(수수료선취-온라인)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04 - 2026.04.03	27	27	10	16	28	54	9	17
2024.04.04 - 2025.04.03	27	27	3	3	3	3	27	28
2023.04.04 - 2024.04.03	34	32	2	2	10	10	27	28

주1) 2025.04.04 - 2026.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830,533,602좌 / 830,483,765원

주2) 2024.04.04 - 2025.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04,690,454좌 / 104,690,454원

주3) 2023.04.04 - 2024.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24,084,493좌 / 124,084,493원

-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A1(수수료선취-오프라인)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04 - 2026.04.03	100	100	36	50	68	99	67	130
2024.04.04 - 2025.04.03	127	127	6	7	33	34	100	104
2023.04.04 - 2024.04.03	161	146	5	5	40	39	127	128

주1) 2025.04.04 - 2026.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6,248,790,113좌 / 6,248,227,710원

주2) 2024.04.04 - 2025.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46,651,912좌 / 346,651,912원

주3) 2023.04.04 - 2024.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81,745,270좌 / 81,745,270원

-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C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04 - 2026.04.03	0	0	0	0	0	0	0	0
2024.04.04 - 2025.04.03	0	0	0	0	0	0	0	0
2023.04.04 - 2024.04.03	0	0	0	0	0	0	0	0

주1) 2025.04.04 - 2026.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66,944좌 / 66,935원

주2) 2023.04.04 - 2024.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603,800좌 / 603,800원

-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C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04 - 2026.04.03	0	0	0	0	0	0	0	0
2024.04.04 - 2025.04.03	0	0	0	0	0	0	0	0
2023.04.04 - 2024.04.03	0	0	0	0	0	0	0	0

주1) 2024.04.04 - 2025.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7,327좌 / 47,327원

-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C3(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4.04 - 2024.04.03	0	0	0	0	0	0	0	0

-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C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04 - 2026.04.03	43	43	2	3	14	19	32	61
2024.04.04 - 2025.04.03	54	54	3	3	14	15	43	45

2023.04.04 - 2024.04.03	64	60	1	1	12	12	54	56

주1) 2025.04.04 - 2026.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927,820,721좌 / 2,927,557,209원

주2) 2024.04.04 - 2025.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46,856,935좌 / 146,856,935원

주3) 2023.04.04 - 2024.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35,519,167좌 / 235,519,167원

-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C-W(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04 - 2026.04.03	2	2	0	0	1	1	1	2
2024.04.04 - 2025.04.03	2	2	0	0	0	0	2	2
2023.04.04 - 2024.04.03	2	2	0	0	0	0	2	2

주1) 2025.04.04 - 2026.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12,116,587좌 / 112,112,102원

주2) 2024.04.04 - 2025.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7,292,632좌 / 7,292,632원

주3) 2023.04.04 - 2024.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2,109,596좌 / 12,109,596원

-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04 - 2026.04.03	15	15	17	25	16	24	16	31
2024.04.04 - 2025.04.03	18	18	4	4	7	7	15	16
2023.04.04 - 2024.04.03	23	21	3	3	7	7	18	19

주1) 2025.04.04 - 2026.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493,603,131좌 / 1,493,468,698원

주2) 2024.04.04 - 2025.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2,917,468좌 / 52,917,468원

주3) 2023.04.04 - 2024.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0,200,499좌 / 20,200,499원

-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C-F(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04 - 2026.04.03	0	0	126	133	126	154	0	0

-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04 - 2026.04.03	9	9	2	3	4	5	7	14
2024.04.04 - 2025.04.03	11	11	1	1	3	4	9	9
2023.04.04 - 2024.04.03	13	12	1	1	2	2	11	12

주1) 2025.04.04 - 2026.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676,198,926좌 / 676,158,354원

주2) 2024.04.04 - 2025.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5,237,758좌 / 35,237,758원

주3) 2023.04.04 - 2024.04.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61,723,281좌 / 61,723,281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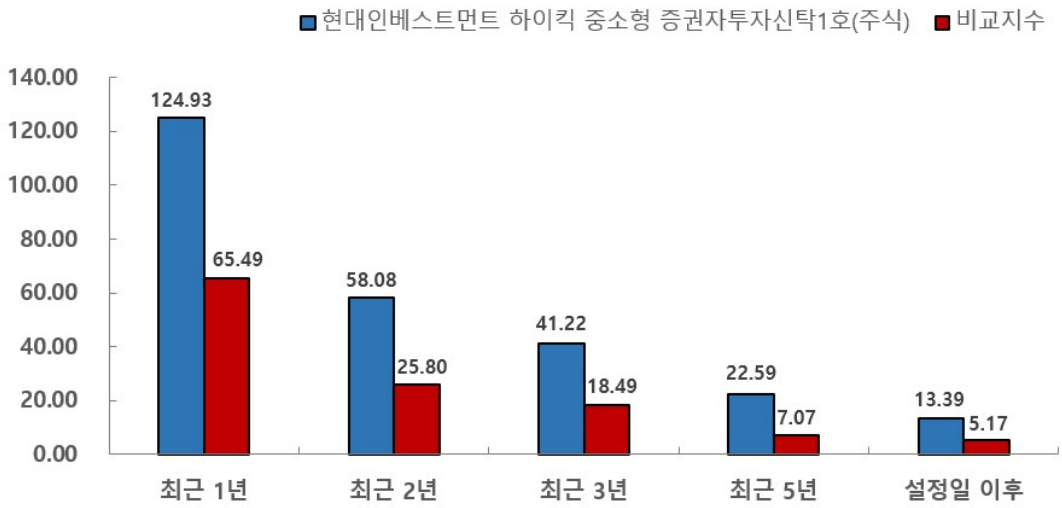

(단위 :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5.04.28 ~ 26.04.27	24.04.28 ~ 26.04.27	23.04.28 ~ 26.04.27	21.04.28 ~ 26.04.27	11.04.04 ~ 26.04.27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124.93	58.08	41.22	22.59	13.39
비교지수	65.49	25.80	18.49	7.07	5.17
수익률변동성	24.14	22.27	20.79	20.10	21.54
P1-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122.53	56.35	39.66	21.21	12.82
비교지수	65.49	25.80	18.49	7.07	6.87
수익률변동성	24.14	22.27	20.79	20.10	22.17

P2-e(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122.59	56.39	39.69	21.24	14.09
비교지수	65.49	25.80	18.49	7.07	7.27
수익률변동성	24.14	22.27	20.79	20.10	22.21
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122.86	56.58	39.87	21.39	7.06
비교지수	65.49	25.80	18.49	7.07	4.53
수익률변동성	24.14	22.27	20.79	20.10	22.71
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121.83	55.83	39.20	20.80	7.20
비교지수	65.49	25.80	18.49	7.07	4.78
수익률변동성	24.14	22.27	20.79	20.10	22.56
C-P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121.73	55.75	39.13	20.73	7.45
비교지수	65.49	25.80	18.49	7.07	5.28
수익률변동성	24.14	22.27	20.79	20.10	22.77
A-e(수수료선취-온라인)	122.48	56.30	39.62	21.17	11.09
비교지수	65.49	25.80	18.49	7.07	7.16
수익률변동성	24.14	22.27	20.79	20.10	22.22
A1(수수료선취-오프라인)	121.59	55.66	39.04	20.66	11.63
비교지수	65.49	25.80	18.49	7.07	5.17
수익률변동성	24.14	22.27	20.79	20.10	21.54
C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	-	-	170.67
비교지수	-	-	-	-	138.99
수익률변동성	-	-	-	-	38.19
C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121.49	55.59	38.98	20.60	13.92
비교지수	65.49	25.80	18.49	7.07	7.03
수익률변동성	24.14	22.27	20.79	20.10	21.98
C-W(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123.36	56.94	40.19	21.68	11.70
비교지수	65.49	25.80	18.49	7.07	6.76
수익률변동성	24.14	22.27	20.79	20.10	21.64
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121.69	55.73	39.11	20.72	11.70
비교지수	65.49	25.80	18.49	7.07	5.14
수익률변동성	24.14	22.27	20.79	20.10	21.54
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122.69	56.46	39.76	21.30	10.99
비교지수	65.49	25.80	18.49	7.07	6.94
수익률변동성	24.14	22.27	20.79	20.10	22.14

주1) 2013년 4월 15일 이전 비교지수 : KOSPI 95% + CALL 5%

2013년 4월 15일 이후 비교지수 : KOSPI중형주 60% + KOSPI 소형주 20% + KOSDAQ100 15% + CALL 5%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말합니다.

주6) 종류(C1)는 전부환매로 인하여 2025년 1월 31일부터 2026년 1월 13일 미운용되었으며, 2026년 1월 14일 재설정되었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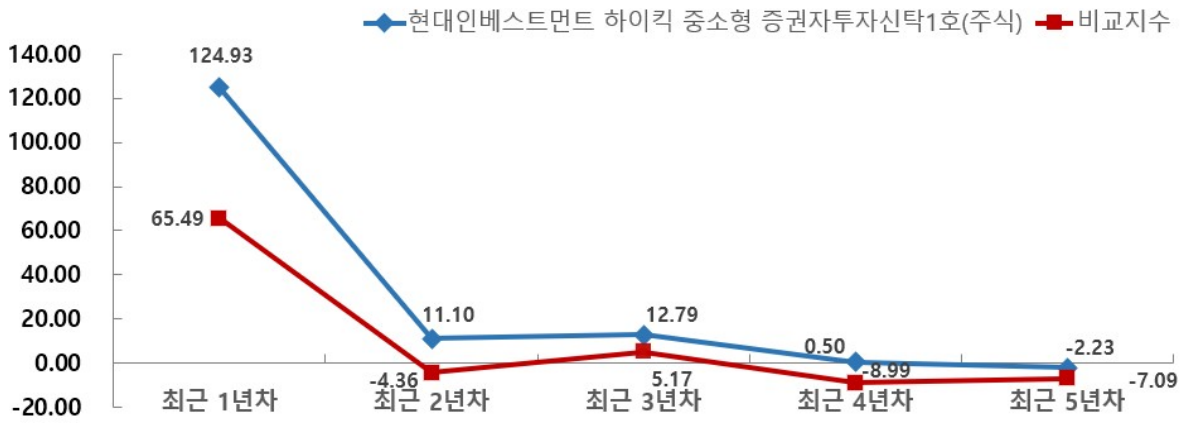

(단위 :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5.04.28 ~ 26.04.27	24.04.28 ~ 25.04.27	23.04.28 ~ 24.04.27	22.04.28 ~ 23.04.27	21.04.28 ~ 22.04.27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124.93	11.10	12.79	0.50	-2.23
비교지수	65.49	-4.36	5.17	-8.99	-7.09
P1-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122.53	9.85	11.54	-0.69	-3.32
비교지수	65.49	-4.36	5.17	-8.99	-7.09
P2-e(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122.59	9.88	11.56	-0.67	-3.30
비교지수	65.49	-4.36	5.17	-8.99	-7.09
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122.86	10.01	11.71	-0.54	-3.18
비교지수	65.49	-4.36	5.17	-8.99	-7.09
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121.83	9.47	11.17	-1.06	-3.65
비교지수	65.49	-4.36	5.17	-8.99	-7.09
C-P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121.73	9.41	11.11	-1.12	-3.70
비교지수	65.49	-4.36	5.17	-8.99	-7.09
A-e(수수료선취-온라인)	122.48	9.81	11.51	-0.73	-3.36
비교지수	65.49	-4.36	5.17	-8.99	-7.09
A1(수수료선취-오프라인)	121.59	9.34	11.05	-1.18	-3.76
비교지수	65.49	-4.36	5.17	-8.99	-7.09
C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	-	-	-
비교지수	-	-	-	-	-
C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121.49	9.29	10.99	-1.23	-3.81
비교지수	65.49	-4.36	5.17	-8.99	-7.09
C-W(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123.36	10.27	11.97	-0.29	-2.95
비교지수	65.49	-4.36	5.17	-8.99	-7.09
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121.69	9.40	11.10	-1.13	-3.71

비교지수	65.49	-4.36	5.17	-8.99	-7.09
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122.69	9.92	11.62	-0.62	-3.26
비교지수	65.49	-4.36	5.17	-8.99	-7.09

주1) 2013년 4월 15일 이전 비교지수 : KOSPI 95% + CALL 5%
2013년 4월 15일 이후 비교지수 : KOSPI중형주 60% + KOSPI 소형주 20% + KOSDAQ100 15% + CALL 5%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8)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말합니다.
주9) 종류(C1)는 전부환매로 인하여 2025년 1월 31일부터 2026년 1월 13일 미운용되었으며, 2026년 1월 14일 재설정되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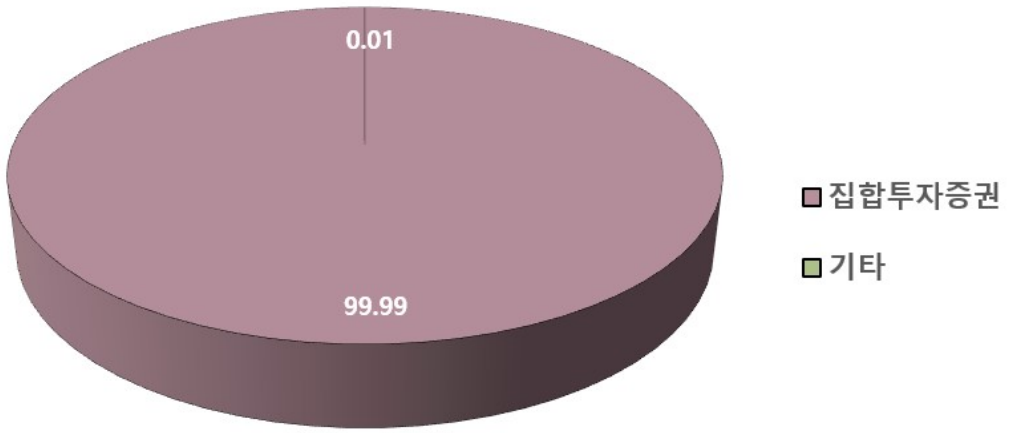

[2026.4.3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285	0	0	0	0	0	0	0	285
	(0.00)	(0.00)	(0.00)	(99.99)	(0.00)	(0.00)	(0.00)	(0.00)	(0.00)	(0.00)	(0.01)	(100.00)
합계	0	0	0	285	0	0	0	0	0	0	0	285
	(0.00)	(0.00)	(0.00)	(99.99)	(0.00)	(0.00)	(0.00)	(0.00)	(0.00)	(0.00)	(0.01)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

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모투자신탁의 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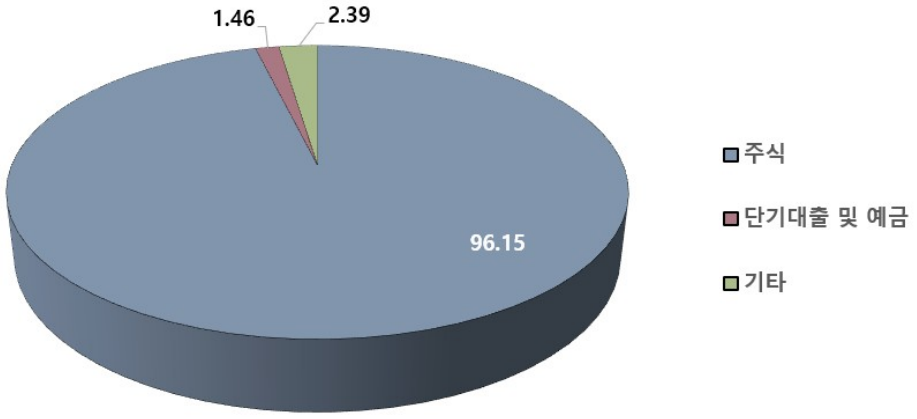

[2026.4.3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282	0	0	0	0	0	0	0	0	4	7	293
	(96.1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46)	(2.39)	(100.00)
합계	282	0	0	0	0	0	0	0	0	4	7	293
	(96.1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46)	(2.39)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펀드의 운용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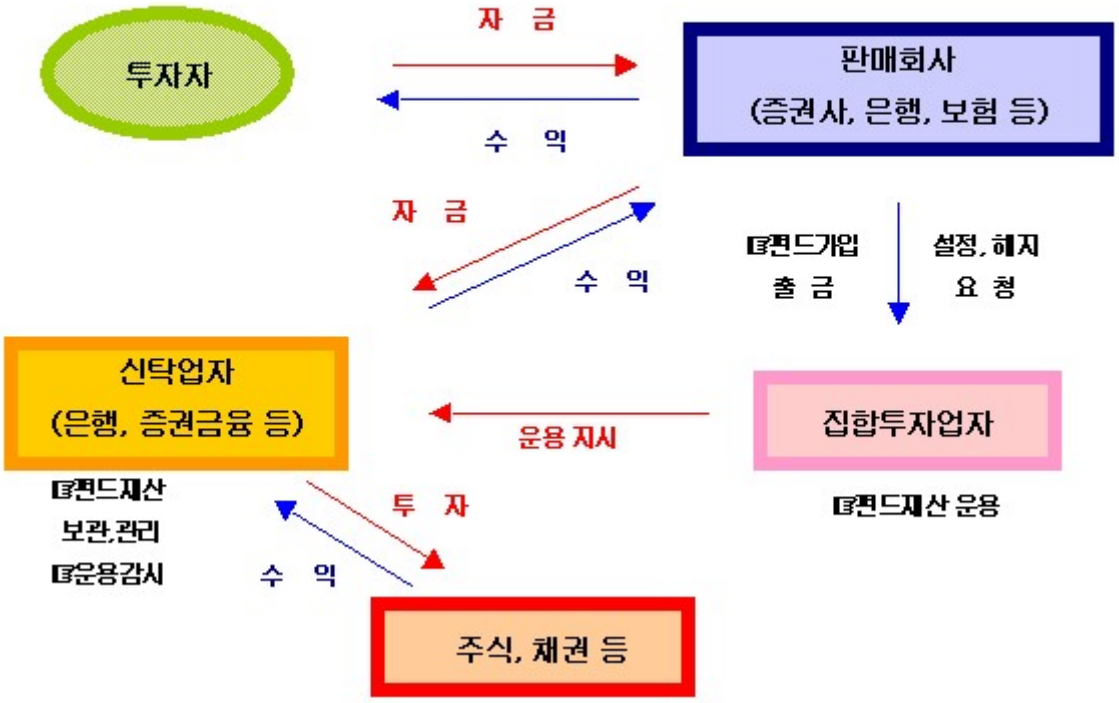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신영증권빌딩 (연락처 T. 02. 6276-7000, 인터넷 홈페이지 www.hdfund.co.kr)
회사연혁	2000. 7 회사설립 2000. 8 투자자문(일임)업 등록 2007.12 자산운용업 인가 및 등록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2008.10 자본금 300억원으로 증자
자본금	300억원
주요주주현황	현대해상 10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요약 재무상태표-단위:백만원]			[요약 손익계산서 - 단위:백만원]		
계정과목	제26기 (25.12.31 현재)	제25기 (24.12.31 현재)	계정과목	제26기 (25.1.1~25.12.31)	제25기 (24.1.1~24.12.31)
자산총계	159,099	83,490	영업수익	100,243	37,538
			영업비용	27,284	21,612
부채총계	44,999	15,394	영업이익	72,959	15,925
자본금	30,000	30,000	영업외수익	103	36
			영업외비용	13,475	10,009
자본총계	114,100	68,096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59,587	5,952
			당기순이익	46,194	4,639

라. 운용자산 규모

<2026년 4월 27일 현재, 단위 : 억원>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부동산·부동산 파생	특별자산·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혼합자산 파생	MMF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365	43,464	837	1,002	7,343	31,795	38,085	16,275	26,788	165,954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소·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 1599-1111 (http://www.hanabank.com)
회사연혁	1971.06 한국투자금융(주) 설립 1991.07 은행으로 전환

	1999.01 합병 하나은행 출범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②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④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⑦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

① 신탁업자가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연락처 T. 02. 2180-0400,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fundpartners.com)
회사연혁	2000년 설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의무와 책임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KIS 자산평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www.bond.co.kr
한국자산평가(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www.koreaap.com
나이스 P&I(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 길 11	www.nicepni.com
(주)에프앤자산평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 2 로 61	www.fnpricing.com
이지자산평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www.egap.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 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 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

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 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③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④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⑤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

⑥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 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재산명세서

②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③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④ 자산매매거래 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 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 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법 상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3) 투자신탁의 피 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의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위 (3)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 제8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 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 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와 같이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hdfund. co.kr)·판매회사 및 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 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된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1)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분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고객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운용본부장의 승인 하에 평가주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지분증권의 평가

구분	투자전략자료	기업분석자료	기업탐방세미나	매매체결능력 및 업무협조
배점기준	20%	30%	40%	10%

- 투자전략 자료 제공은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 및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 기업분석 자료 제공은 기업분석 자료의 적시성 및 충실도를 평가
- 기업탐방 및 세미나는 기업탐방의 적절성과 세미나의 내용에 대한 평가
- 매매체결능력 및 업무협조는 운용지원팀에서 평가하며 증권사의 매매체결능력 및 업무협조 정도 등을 평가
- 상기 평가항목 이외에 주식운용담당부서 내부 합의 및 결재절차를 거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가감하여 평가할 수 있음

② 채무증권의 평가

구분	매매체결능력	정보제공능력	거래보안유지	결제이행능력
배점기준	40%	40%	10%	10%

- 매매체결능력은 매매의 신속성과 정확성 등을 평가
- 정보제공 능력은 시황, 수급, 요청사항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
- 장외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매매 시 최우선 호가를 제시하는 거래사 우선적으로 선정 가능

③ 인덱스 펀드, 차익거래 펀드, 구조화 펀드에서의 국내상장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 관련 장내파생상품과 차익거래의 경우

구분	매매체결능력	매매관련보고와 책임	정보제공능력	거래보안유지 및 일관성
배점기준	50%	20%	20%	10%

- 매매체결 능력은 매매의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차익거래의 경우 수익성과 리스크관리 능력을 평가
- 매매관련 보고와 책임은 매매 시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보고와 매매실수나 사고 시 투자중개업자의 책임인정과 변상의 정도를 평가
- 정보제공 능력은 시장 상황에 대한 사실적 내용과 수급에 관한 주관적 판단을 평가하며 평소 자료 제공의 정도를 평가
- 신속성이나 정확성에 있어 편차가 없이 일관되는 정도를 평가

2) 보관 및 관리

① 매 분기별로 상기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내역과 전 분기 실행내역을 해당 운용본부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② 관련 해당 운용본부는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평가 및 실행내역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의 매매를 위한 투자중개업자의 선정에 있어 해당 해외시장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평가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추가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의 정의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름니다.
협회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